

 신안산대학교	<b>교육방송국 규정</b>	규정번호 3-1-6 제정일자 1995.03.14 개정일자 2019.11.14 책임부서/팀·계 교무처
---	-----------------	--

## 제 1 장 총 칙

**제1조(목적)** 본 규정은 신안산대학교 부속 교육방송국(이하 방송국이라 칭함)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2019.11.14. 개정>

**제2조(명칭)** 본 방송국의 명칭은 신안산대학교 교육방송국이라 하며, 호출부호 SABS(Shin Ansan University Educational Broadcasting Station)라 한다. <2019.11.14. 개정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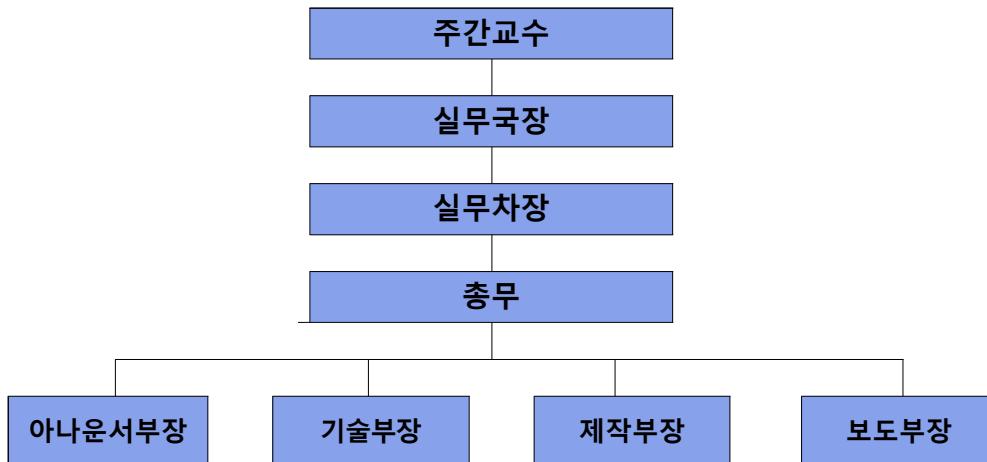
**제3조(위치)** 본 방송국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안산대학로 135 신안산대학교 캠퍼스 내에 둔다. <2019.11.14. 개정>

**제4조(방송국의 운영 목적)** 본 방송국은 대학 교육방송국으로서 다음과 같은 운영 목적을 갖는다.

- ① 뛰어난 개척정신 함양과 투철한 장인정신 발휘, 성실 근면한 봉사정신의 추구를 교육목표로 하고 있는 본 대학의 교육이념을 수호하고자 한다.
- ② 본 방송국은 정의와 진리, 성실과 화합을 국훈으로 하여 방송을 통해 올바른 대학문화 창달과 고급 정서함양에 중점을 두며, 학내 외의 공지사항 및 나아가 국제적 수준의 미래정보를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하고자 한다. <2019.11.14. 개정>

## 제 2 장 기구, 임원, 부서

**제5조(기구)** 본 방송국의 기구는 다음의 표와 같이 조직한다.



**제6조(국장)** 본 방송국의 국장은 총장으로 하고 방송국을 대표한다. <2019.11.14. 개정>

**제7조(주간교수)** ① 본 방송국의 주간교수는 본교 전임교수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
- ② 주간교수는 국장을 보좌하며 본 방송국의 방송 및 기타업무를 관장한다.

**제8조(조교)** ① 조교는 필요에 따라 둘 수 있다.

- ② 조교는 본 방송국 동문 중에서 주간교수가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한다.
- ③ 조교는 주간교수를 보좌한다.

**제9조(임원)** 본 방송국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.

실무차장 - 1인

총무 - 1인

총무차장 - 1인

각부 부장 - 1인

**제10조(학생실무국장)** ① 학생실무국장(이하 실무국장이라 칭함)은 방송제작에 탁월한 학생을 방송국 주간이 추천하고 총장이 임명한다. <2019.11.14. 개정>

② 실무국장은 본 방송국원을 대표하여 임원회의, 국원회의, 편성회의를 소집·주관하고 본 방송국 업무를 지휘·총괄한다.

③ 실무차장은 실무국장을 보좌하고 실무국장 유고시 그 임무를 대행한다.

<17.12.11개정>

**제11조(총무)** ① 총무는 운영비를 관리하고 비품과 도서를 관리한다.

② 총무차장은 총무를 보좌하여 총무 유고시 그 임무를 대행한다.

<17.12.11개정>

**제12조(각부부장)** 각부 부장은 담당부서를 지휘하고 책임진다.

**제13조(부서)** 본 방송국의 원활한 방송업무를 위해 제작부, 아나운서부, 보도부, 기술부를 두며 별도로 특별기구를 둘 수 있다.

**제14조(제작부)** 제작부는 각 프로그램의 기획, 연출, 제작을 담당한다.

**제15조(아나운서부)** 아나운서부는 프로그램의 진행을 담당한다.

**제16조(보도부)** 보도부는 학내·외 사건들을 신속, 정확, 공정하게 보도하고 보도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진행을 담당한다.

**제17조(기술부)** 기술부는 방송에 있어서 기술적인 운용을 담당한다.

**제18조(특별기구)** 보다 발전적인 방송국 운용을 위해 모니터 요원을 둘 수 있다.

**제19조(임원개선)** ① 신 임원은 2학기를 이수한 자로서 본 방송국 정국원으로서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원칙으로 한다.

② 본 방송국의 임원은 선출제에 의해 개선한다.

③ 신 임원의 선출, 임명 절차는 다음과 같다.

가. 신 임원은 임원회의의 추천을 통해 국원회의에서 결정하여 선임한 자.

나. 국원회의에서 선임된 신 임원은 주간교수의 추천을 거쳐 총장이 임명한다.

다. 신 임원은 소정의 기간을 거쳐 구 임원으로부터 업무를 인수인계 받는다.

④ 임원이 결원된 경우에는 결원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주간교수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(단,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).

**제20조(임기)** 임원의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임원의 사업이 끝나지 않았을 때는 임무를 완수하는 시점까지로 한다. <2019.11.14. 개정>

### 제 3 장 국 원

**제22조(구분)** 본 방송국의 국원은 정국원과 수습국원, 명예국원으로 구분한다.

**제23조(국원)** ① 본 방송국의 정국원은 본 대학의 재학생으로서 소정의 전형과 수습기간을 거친 자로 한다(단, 휴학을 한 국원은 휴학원 제출일로부터 국원의 자격이 정지되며 복학 시에는 명예국원이 된다). <2019.11.14. 개정>

② 수습국원은 본 대학의 재학생으로서 소정의 전형을 합격한 자로 한다.

③ 명예국원은 3학기 이상의 방송국 활동을 마친 자로서 실무국원을 후원하고 친목을 도모한다.

**제24조(선발)** 수습국원은 본 대학 1학년생에 한에 매 학년초에 소정의 시험(필기시험과 면접)을 거

쳐 선발한다.

**제25조(교육과 승격)** ① 수습국원은 일정한 수습교육을 받아야 하며, 그 기간은 6개월로 한다(단, 특별한 경우 임원회의를 거쳐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).

② 수습기간을 거친 수습국원은 정국원 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주간교수의 추천을 통해 총장의 임명으로 정국원이 된다.

**제26조(재적기간)** 정국원의 재적기간은 정국원으로 임명한 날부터 졸업 시까지 할 수 있다.

**제27조(권한 및 의무)** ① 본 방송국 국원은 방송국 업무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.

② 본 방송국 국원은 국칙이 부여한 일반적으로 인정된 권리와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으며 학교와 방송국은 이를 보장한다.

③ 본 방송국 국원은 국칙을 준수하고 본 방송국에서 의결된 일체의 사항에 따르며 주체적이고, 능동적인 자세로 주어진 방송업무에 충실히 임할 의무를 진다.

#### 제 4 장 방 송 활 동

**제28조(방송 및 활동)** 본 방송국은 방송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활동을 한다.

1. 정규방송 및 특별방송, 특집방송, 임시방송
2. 방송제 및 대외행사
3. 기타 필요한 활동 <2019.11.14. 개정>

**제29조(방송 제작 및 검토)** 정규방송은 주간 기본 편성표에 따라 제작하며 해당부장과 실무국장 및 주간교수의 사전 검토와 경우에 따른 사후 검토가 있다. <2019.11.14. 개정>

**제30조(방송의 책임)** 제작, 방송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제작자와 해당부장, 실무국장이 책임을 진다. <2019.11.14. 개정>

**제31조(국칙)** 방송활동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국칙에 따른다. 단, 국칙은 본 규정에 준하는 효력을 발휘한다. <2019.11.14. 개정>

#### 제 5 장 회의 및 집결

**제32조(회의)** 본 방송국은 방송국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국원회의, 임원회, 제작회의, 각 부서별 회의를 갖는다.

**제33조(국원회의)** ① 본 회의의 구성원은 전 국원으로 하며, 최고 의결권을 가진다. 단, 주간교수가 국원회의의 의결사항에 이의를 제기했을 경우 주간교수와 임원진의 재협의를 거친 후 국원 회의의 동의를 얻어 결정한다.

② 본 회의는 주1회 수요일 소집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실무국장은 임원회의를 거쳐 임시국원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.

③ 본 회의에서는 방송 제반업무에 대한 토의나 각 회의에서 제안된 안건을 토의하며, 국원 3분의 2이상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,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실무국장이 결정한다. <2019.11.14. 개정>

**제34조(임원회의)** ① 임원회의는 실무국장 및 임원 1인 이상의 요구로 실무국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으며, 방송계획 심의, 예산심의, 국원의 표창 및 징계, 기타 방송운영에 관한 사항을 토의한다.

② 의결은 임원 3분의 2이상 출석과 출석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. 단,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실무국장이 결정한다. <2019.11.14. 개정>

**제35조(제작회의)** ① 제작회의는 실무국장이 소집하고 그 구성원은 전 임원과 제작진 전원으로 한

다.

- ② 본 회의에서는 방송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개편한다.
- ③ 본 회의는 매 학기 등록기간 이전에 소집한다.
- ④ 방송 프로그램의 편성은 주간교수의 승인을 받는다.

**제36조(부서별 회의)** ① 본 회의는 해당부장이 소집하고 구성원은 해당부장과 부원으로 한다. 단, 필요한 경우 임원도 참석할 수 있다. <2019.11.14. 개정>

② 본 회의에서는 해당부서의 업무를 토의, 결정하고 각 회의의 결정사항의 수행에 대한 세부사항을 결정한다.

## 제 6 장 재 정

**제37조(재정)** 본 방송국의 재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.

1. 학교 지원비
2. 본 대학 학생 자율적 경비
3. 기타 수익금 <2019.11.14. 개정>

**제38조(예산 편성 및 결산)** 예산편성 및 결산은 학기별로 구분하여 연 2회로하고 주간교수, 실무국장, 총무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. <2019.11.14. 개정>

**제39조(예산 집행)** 예산집행은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 실무국장과 총무의 협의 하에 주간교수의 승인을 받아 집행한다. <2019.11.14. 개정>

**제40조(예결산 공개)** 예산 편성 및 결산은 국원회의에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. <2019.11.14. 개정>

## 제 7 장 표창 및 징계

**제41조(표창)** 본 방송국에 지대한 공헌을 한 국원이나 동문 및 외부인사에 대해 임원 회의의 심사와 소정의 절차를 거쳐 표창한다.

**제42조(징계)** 방송활동이 부진하고 본 방송국 국칙에 위배된 행위를 했거나 본 방송국의 명예를 훼손시켰을 경우, 임원회의를 거쳐 견책, 경고, 제명의 징계처분이 가능하다.

-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국원은 견책하며, 반성문을 제출한다.
  1. 방송운영 수칙을 지키지 아니한 자.
  2. 국원회의의 결정을 따르지 아니한 자.
  3. 제작회의의 결정을 따르지 아니한 자.
  4. 총회 및 정식으로 공고된 행사에 24시간 전에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불참한 국원.<2019.11.14. 개정>
- 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국원은 경고에 처하며, 시말서를 제출한다.
  1. 자신의 담당 방송업무를 무단 거부한 국원
  2. 부적절한 방송으로 인해 각종 물의를 일으킨 국원
  3. 한 학기 중 3회의 견책을 받은 국원 <2019.11.14. 개정>
- ③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국원은 제명할 수 있다.
  1. 신안산대학교의 적을 제명한 자.
  2. 2학기를 마치지 아니한 자.
  3. 이 규약과 총회의의 결정사항에 대해 이행을 거부한 국원
  4. 대내외적으로 방송국의 명예를 훼손한 국원

5. 연간 3회 이상의 경고를 받은 국원

④ 위의 각 징계 사유에 대한 유권 해석이 필요한 경우 국원회의에서 결정된 것을 따른다.

⑤ 징계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원회의를 거쳐 실무국장은 발생 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. <2019.11.14. 개정>

## 제 8 장 국칙의 개정

**제43조(국칙의 개정)** 국칙은 임원회의의 발의와 전 국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 국원회의에서 개정 할 수 있다. <2019.11.14. 개정>

**제44조(국칙의 선포)** 의결된 개정안은 주간교수의 승인을 얻은 다음 실무국장이 선포한다. <2019.11.14. 개정>

## 제 9 장 부 칙<삭제>

**제45조** 본 국칙은 본 방송국의 원활한 방송업무 수행을 위한 자율적인 규칙이다.<삭제>

**제46조** 본 방송국은 이 국칙 외에 내부규칙을 둔다.<삭제>

**제47조** 이 국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.<삭제>

**제48조** 본 국칙은 선포된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.<삭제> <2019.11.14. 개정>

### 부 칙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1995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국칙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2017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2019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.